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황운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89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8.

발 의 자 : 황운하 · 서왕진 · 정춘생
김준형 · 차규근 · 이강일
장종태 · 강경숙 · 신장식
김선민 · 이해민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조사, 공공위탁관리, 공용부분의 유지·보수 비용 체납에 대한 조치, 소방·승강기 등 시설의 안전관리 및 주택 보존을 위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피해주택의 규모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실제 지원의 범위와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, 전세사기피해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

황에서 임대인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로 주택의 정상적인 관리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거환경 악화와 안전사고 위험이라는 추가적인 피해를 부담할 수 있는 만큼, 피해주택의 안전관리와 피해 복구가 지역별 재정여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, 전세사기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28조의2제3항).

법률 제 호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의2제3항 중 “수”를 “수 있으며, 국가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의2(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) ①·② (생 략)	제28조의2(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) ①·② (현 행과 같음)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시행 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수 있으며, 국가는 <u>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 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-----.</u>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